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2.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이영빈 의원 등 7명(홍복조, 박왕규, 박종길,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 발의일자: 2021. 11. 18.
- 회부일자: 2021. 11. 19.
- 상정 및 의결: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 12. 2.)

2. 제정이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안 제4조)
- 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피해자 등 정보보호(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와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사무에 관한 것으로, 기존 법체계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혹은 '성매매'의 범주에서 논의되던 '여성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0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의 상담건수는 14,963건으로 이중 폭력피해상담이 10,92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9,343건, 성폭력 669건, 데이트폭력 428건, 스토킹 피해 49건 등으로 여성폭력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특히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성폭력의 양상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구성과 내용이 적정하며,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